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5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허성무 · 강득구
이기현 · 김승원 · 곽상언
김 윤 · 이광희 · 이주희
이재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.

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,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최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원위원회 개최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,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”을 “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전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의2(전원위원회)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,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<u>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</u>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(全院委員會)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63조의2(전원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② 전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.
② ~ ⑤ (생략)	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